



인삼, 디페노코나졸 국제기준설정 확정



우리나라에서 국제규격위원회에 기준을 설정한 첫 사례
수삼, 홍삼 등의 수출이 활기를 띠어 식품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권기성_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학물질과장

Codex 개요

2011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제43차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CCPR)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다.

Codex는 1962년 FAO와 WHO의 합동식품 규격작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식품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정부간 협의 기구이다. Codex 규격은 강제성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1995년 WTO 체제하의 SPS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발효되어 Codex 규범 등이 범세계적인 공통 규격으로 활용됨에 따라 날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Codex 위원회는 의장 1

명과 부의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마다 총회를 개최하여 기준 및 규격 등을 채택·확정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활동내용을 총괄적으로 결정한다. 농약잔류분과위원회는 일반과제분과위원회 10개 중 하나로 식품의 국제교역에 있어 개별 식품 또는 식품군에 대한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동물용 특정 사료에 대한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중국에서만 5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59개 회원국에서 189명, 11개 기관에서 63명으로 총 252명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로써 북경 시내에 소재한 쿤룬호텔(Kunlun hotel)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정부관계자 9명이



농약잔류분과위원회 회의전경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식품연구원 등 산업계 및 학계에서 7명의 참관인이 참석하여 총 16명이 참석했다.

회의가 진행된 일주일의 기간 중 4월 4일부터 7일까지는 의제에 대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됐으며, 8일은 의제에 대한 회의 결과보고서가 작성됐고, 마지막날인 9일에는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또한 4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잔류농약 분석결과의 불확도 측정에 대한 지침 개정에 대한 워킹 그룹이 개최되어 활발한 의견이 개진됐다.

농약잔류분과위원회 의제

이번 농약잔류분과위원회 참석을 위해 제시된 의제에 대하여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 및 식품분류, 분석법 등에 대한 정부간 사전협의를

3차례 진행하여, 대한민국 대표 의견을 조율했다. 의제는 (표 1)에 나타났다.

국내 대표단 성과

우리나라에서 의제에 대한 발언 및 제안내용 중 의제 5는 식품 및 사료 중 농약의 최대잔류허용기준초안에 대한 검토 단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0년 인삼 중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FAO/WHO 농약잔류전문가위원회(Joint FAO/WHO Meeting on Pesticide Residues, JMPR)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그 결과로 이번 제43차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 우선 검토 목록에 올라 Codex 기준 설정 가속단계인 5/8단계로 진행이 확정됐다. 이는 올해 6월에 개최되는 Codex 총회에서 이번이 없는 한 최종 기준으로 확정된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규격위원회에 기



현장보고 - 제43차 CODEX 농약잔류분과 회의 개최

■ 표 1. 제 43차 농약잔류분과위원회 의제 목록

의제번호	의제목록
1	의제 채택 (Adoption of the Agenda)
2	분과위원회 서기 선정 (Appointment of the Rapporteurs)
3	총회 및 타분과에서 회부된 사항들 (Matters Referred to the Committee by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nd Codex committees)
4	(a) 2010 JMPR 보고서의 일반적인 검토사항 (Report on Items of General Considerations by the 2010 JMPR)
	(b) 2010 JMPR 보고서의 CCPR 관련 특정 관심사항 (Report on 2010 JMPR responses to specific concerns raised by CCPR)
5	식품 및 사료 중의 농약최대잔류허용기준(초)안-4, 7단계 (Draft and Proposed Draft Maximum Residue Limits for Pesticides in Foods and Feeds at Steps 7 and 4)
6	MRLs 평가시 비례 적용에 관한 논의문서 (Discussion Paper on the Application of Proportionality in Selecting data for MRL estimation)
7	(a) 식품 및 사료에 대한 Codex 분류항목 개정안-7단계 (Draft Revision of the Codex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 at Step 7: <i>Tree nuts, Herbs and Spices</i>)
	(b) 식품 및 사료에 대한 Codex 분류항목 개정(초)안-4단계 (Proposed Draft revision of the Codex Classification of Foods and Animal Feeds at Step 4: <i>Assorted tropical and sub-tropical fruits—edible peel; Assorted tropical and subtropical fruits—inedible peel; Leafy vegetables (including Brassica leafy vegetables); and Brassica (cole or cabbage) vegetables, cabbage, head and flowerhead cabbages</i>)
8	(a) 잔류허용기준의 외삽적용을 위한 대표작물 선정 원칙 및 기준안-7단계 (Draft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Representative Commodities for the Extrapolation of MRLs for Pesticides for Commodity Groups at Step 7)
	(b) 잔류허용기준의 외삽적용을 위한 대표작물 선정 원칙 및 기준안 (Proposed Draft Addenda to the Draft Principles and Guidance for the Selection of Representative Commodities for the Extrapolation of Maximum Residue Limits for Pesticides for Commodity Groups)
9	소면적 재배 작물 및 특용작물에 대한 농약최대잔류허용기준 설정지침에 대한 논의문서 (Discussion Paper on the Guidance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Maximum Residue Limits for Pesticides for Minor Use and Specialty Crops)
10	(a) 잔류농약 분석결과와 불확도 측정에 대한 지침 개정 (Proposed draft revision of the Guidelines on the Estimation of Uncertainty of Results for the Determination of Pesticide Residues at Step 4)
	(b) CCPR에서 농약잔류 분석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문서 (Discussion Paper on how to address methods of analysis for pesticide residues by the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11	CCPR에 적용되는 위해분석원칙 개정 (Revision of the Risk Analysis Principles Applied by the 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
12	(a) Codex 농약 우선 대상 목록 설정 (Establishment of Codex Priority Lists of Pesticides)
	(b) Lindane의 Codex MRLs 검토 (Consideration of the status of Codex MRLs for Lindane)
13	기타사업 및 향후작업 (Other Business and Future Work)
	(a) CCPR에 과학적인 자문의 개정에 대한 JMPR Resource 논의문서 (Discussion Paper on JMPR Resource Issues in the Provision of Scientific Advice to CCPR)
	(b) 차의 Codex MRLs 평가 (Assessment of MRLs for Pesticides in Tea)
14	차기 회의일시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Next Session)
15	보고서 채택 (Adoption of the Report)

준을 설정한 첫 사례이며, 또한 인삼에 대한 기준이 세계 최초로 설정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기준 설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이 한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동안 국제기준이 없어 수출이 어려웠던 수삼, 홍삼 등의 수출이 활기를 띠어 식품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3차 농약잔류분과위원회 대한민국 대표단

의제 7은 식품 및 사료

에 대한 분류 개정안으로, 열대과일로 분류되어 있는 감 및 대추를 우리나라의 식품분류인 이과류 및 핵과류로 분류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CRD(Conference Room Document)를 제출했다. 2월에 감 및 대추에 대한 자료를 워킹 그룹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본 회의장에서 CRD를 제출했으며,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되어 감과 대추는 분류에 대한 검토가 내년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되기로 확정됐다.

또한 유자의 명칭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유주(Yuju)’라는 명칭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자(Yuja)’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유주’와 ‘유자’가 함께 병기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견이 반영되어 ‘유자’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도록 확정됐다.

Codex는 그 특성상 국제무역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향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기준설정 등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인삼 중 농약 아зок시스트로빈(Azoxystrobin), 식품분류 개정(안), 감, 감귤 등 수출 대표농산물의 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번 농약잔류분과위원회 참석을 통해 Codex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역할과 업무분담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서 그에 따른 책임과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Codex 업무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㉞